



전기 Q&A

■ 케이블 트레이 면적, 높이

관련조항 _ 판단기준 제194조

Q 내선규정 트레이면적은 높이가 얼마일 때 적용된 것입니까? 트레이 높이보다 케이블이 높아도 상관없습니까? 내규에서 적용된 트레이 높이와 다른 규격품을 적용할 때 점유면적은 비례해서 적용해도 됩니까?

A ● 판단기준 제194조와 내선규정 제2289절에서 '케이블 단면적 합계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'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

● 따라서, 케이블 시설은 케이블트레이 점유 면적(가로, 세로)이내에 시설하여야 하므로 케이블 트레이 높이 이하에 시설하여야 합니다.

● 판단기준과 내선규정 표에서 케이블 트레이 높이를 30mm, 25mm, 28mm로 하고 있으나, 케이블 트레이 높이는 KS C 규격을 참고로 하여 설계자가 케이블 지름과 케이블 트레이 높이를 확인하여 그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KEA